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한우산업 등의 정의, 산업육성 종합계획 및 시·도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
- 한우산업 실태조사, 연구개발, 수급조절, 도축·출하장려금, 품질·유통 개선, 수출기반 조성 및 유전자원 보호·육성 등의 근거를 마련함.

II. 검토의견

- 안 제26조¹⁾는 기업자본 및 기업의 생산 참여를 배제하면서 그 정의와 판단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기업의 생산 참여는 단순한 투자 활동을 넘어 헌법 제15조²⁾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제119조제1항³⁾의 경제상의 자유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해당 조항처럼 기업의 시장진입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1) 제26조(기업자본과 기업의 생산참여 제한) ① 기업자본과 기업의 생산 참여는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업자본과 기업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산에 참여한 기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한우농가와 협력계획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3)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구조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익을 위한 규제라 하더라도 규제 대상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설정하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불특정 다수의 기업의 참여를 법률로써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우려(헌법 제119조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 침해)가 있으므로,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진출 가능하도록 해당 조문의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제 정 안	농림축산식품부 수정의견
제26조(기업자본과 기업의 생산참여 제한) ① <u>기업자본과 기업의 생산 참여는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업자본과 기업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산에 참여한 기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한우농가와 협력계획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기업자본과 기업의 생산참여) ① 대 <u>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 업이 한우 생산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농 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 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라----- ----- ----- -----

- 안 제27조제6항⁴⁾은 한우의 정액, 수정란, 혈액, 디엔에이(DNA) 등 유전자원의 국외반출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3조⁵⁾는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우의 유전자원을 국외로

4) 제27조(한우 유전자원 보호 및 개량) ⑥ 한우의 정액, 수정란, 혈액, 디엔에이(DNA) 등 유전자원의 국외반출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제33조(벌칙)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우의 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함.

해당 조항은 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할 경우 정부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나, 승인 주체가 누구인지, 혹은 승인 기준이나 절차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법률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와 같이 ‘정부의 승인’이라는 불명확한 표현만으로는 수범자가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는지 법문상 명확하게 알기 어려워 헌법 제12조 및 제13조⁶⁾에 따른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 바, 해당 위반행위의 구성요건과 적용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7조 및 제33조와 관련하여, 한우의 경우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⁷⁾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6)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국외반출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농업생명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외분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내 농업생물다양성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식물·동물·미생물 및 버섯 등의 국내 야생종 및 재래종
2.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식물(식물의 일대잡종 종자는 제외한다)·동물·미생물 및 버섯 등의 육성종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내 농업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생명자원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미 국외 반출 승인 및 이를 어길 시 벌칙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타법과의 충돌 및 법률 적용·해석에 혼선이 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제 정 안	농림축산식품부 수정의견
제27조(한우 유전자원 보호 및 개량) ① 국가는 한우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한우의 유전적 특성이 안정적으로 후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한우의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등 유전자원 운영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한우의 정액, 수정란, 혈액, 디엔에이(DNA) 등 유전자원의 국외반출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신 설 〉 제33조(벌칙)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우의 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한우 유전자원 보호 및 개량) ① (생 략) ⑥ 한우의 정액, 수정란, 혈액, 디엔에이(DNA) 등의 국외반출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제6항을 위반하여 한우의 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 제33조(벌칙) 〈삭 제〉

○ 다음은 조문별 관계 기관의 의견임.

조문	기관	의견 요지
제1조(목적)	기획재정부	한우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은 기존 축산법 제1조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축종별 개별 법률의 남발을 초래할 수 있어 행정·입법 체계의 비효율이 우려됨.

③ 제1항의 국외반출승인 기준과 절차 및 제2항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벌칙) ③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농업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조문	기관	의견 요지
제7조, 제9조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기획재정부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이미 가축 사육·유통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운영 중이므로, 한우만을 위한 별도 시스템 구축은 유사·중복 사업이며 예산 낭비 우려가 있음.
제10조(한우산업 발전협의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에 유사한 정책자문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 협의회 설치는 기능 중복 우려가 있음. 필요한 경우 기존 위원회 분과로 운영하고, 신설 시에는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라 5년 이내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함.
제12조(한우의 수급조절)	공정거래위원회	한우 수급조절이 생산자 간 출하 제한으로 이어질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위와의 협의 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제13조~제15조 (장려금, 경영비용 지원, 경영개선자금)	기획재정부	관련 지원 내용은 축산법 및 축산자조금법 등 현행 법령에서도 가능한 사항으로, 별도 조항 신설은 실익이 없으며 법 체계 중복 우려도 있음. 특히 백신 예방접종비용은 이미 정부 지원 중임.
제17조(한우 자금률 확보)	기획재정부	자금률 확보를 위한 최저 생산비 보장은 한우 생산 과잉과 수급 불안정, 과도한 재정 소요, 타 축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반대함.
제18조 (교육 지원)	기획재정부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라 이미 축산업자 교육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이 법에서 별도 교육 조항을 둘 필요가 없으며 제정 실익이 없음.
제19조(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기획재정부	축산자조금법에 따라 유사한 정보 제공·지원 제도가 존재하므로, 이 조항은 기존 법령과 중복되어 실효성이 낮음.
제23조(도축·가공 시설 등 지원)	기획재정부	도축장 및 가공·물류시설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영역이므로, 정부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는 방식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27조, 제33조 (유전자원 보호 및 벌칙)	법무부	유전자원 국외 반출에 대한 승인제도를 두는 것은 타당하나, 승인 주체·대상 행위·행정기관·요건 등이 불명확하여 유사 입법례를 참고한 구체적인 요건 보완이 필요함.
제31조 (한우의 날)	행정안전부	기념일 신설은 주관 부처가 정책적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야 하며, 기존 기념일과의 중복 여부도 사전 검토가 필요함.

(전문위원 김 성 완)